

『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정」에 근거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에 근거하여 <지방재정투자사업 위원회>의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<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>와 통합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「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「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」로 변경
- <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>의 명칭을 <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>로 변경하고, 위원의 자격 및 위원회의 기능에 투자심사에 관한 내용 추가(안 제3~4조)
-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제척 규정 위반 시 위원의 해촉 근거 마련(안 제5조~제6조)
-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방재정에 대해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위원 위촉 시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는 등, 본 조례 개정 내용에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